##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61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정태호·김종민·한준호

정을호 • 황명선 • 강준현

손명수 · 이학영 · 김주영

이정문 • 전현희 • 강선우

서영교 · 이수진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산업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 와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며 이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가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개별 대학 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음.

이에 위와 같이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인력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조성하 는 등 고등교육에 있어 안정적인 공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경 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고등교육 공유·협력의 기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인력 등을 공유하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공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협력 기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9조의2(고등교육 공유・협력의
	기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연구
	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
	이 보유한 시설 · 인력 등을 공
	유하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
	•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공유·협력을 <u>활</u>
	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u>을 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
	유·협력 기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